

##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공업·시설)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공업·시설)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직렬(직류) 및 직급	선발예정인원	담당예정업무	근무예정기관
공업(일반기계) 9급	4	- 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의 기계분야 시설사업 관련 업무 · 공사발주 및 공사감독, 준공검사, 하자검사 · 실태조사 및 예산계획 수립 · 설계 및 설계 지도감독 · 내진보강, 석면관리 등 안전 관련 업무 - 기계분야 학교시설 안전점검 업무 - 기타 기관장(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 포함)
공업(일반전기) 9급	7	- 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의 전기분야 시설사업 관련 업무 · 공사발주 및 공사감독, 준공검사, 하자검사 · 실태조사 및 예산계획 수립 · 설계 및 설계 지도감독 · 내진보강, 석면관리 등 안전 관련 업무 - 전기분야 학교시설 안전점검 업무 - 기타 기관장(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시설(일반토목) 9급	2	- 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의 토목분야 시설사업 관련 업무 · 공사발주 및 공사감독, 준공검사, 하자검사 · 실태조사 및 예산계획 수립 · 설계 및 설계 지도감독 · 내진보강, 석면관리 등 안전 관련 업무 - 토목분야 학교시설 안전점검 업무 - 기타 기관장(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직렬(직류) 및 직급	선발예정인원	담당예정업무	근무예정기관
시설(건축) 9급	19	- 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의 건축분야 시설사업 관련 업무 · 공사발주 및 공사감독, 준공검사, 하자검사 · 실태조사 및 예산계획 수립 · 설계 및 설계 지도감독 · 내진보강, 석면관리 등 안전 관련 업무 - 건축분야 학교시설 안전점검 업무 - 기타 기관장(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 포함)
합 계	32		

### 2 시험 방법

####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기준>

- ① 응시자격요건 ② 자기소개서 ③ 직무수행계획서 ④ 우대요건 및 가산점

####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면접시험 평가기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평가기준별 면접위원 점수로 평정하여 고득점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3 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 **응시 연령: 18세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 제한없음**
- **거주지 제한**
  -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 2020.12.31.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 를 기준으로 함
- **응시 결격사유**
  -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

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직렬(직류) 및 직급	자격요건										
공업(일반기계)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li> <li>-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li> <li>-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2년 이상인 사람</li> <li>- 기계관련 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한 사람</li> <li>- 기계관련 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기타 법령에 의한 무대기계·음향전문인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li> </ul>										
	<b>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b>										
	<table border="1"> <tr> <td>기술사</td> <td>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 관리, 품질관리, 소방</td> </tr> <tr> <td>기능장</td> <td>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td> </tr> <tr> <td>기사</td> <td>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 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td> </tr> <tr> <td>산업기사</td> <td>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td> </tr> <tr> <td>기능사</td> <td>컴퓨터응용산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치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회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td> </tr> </table>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 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 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산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치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회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 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 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산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치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회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일반전기)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li> <li>-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li> <li>-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2년 이상인 사람</li> <li>- 전기관련 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한 사람</li> <li>- 전기관련 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기타 법령에 의한 무대조명전문인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li> </ul>										
	<b>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b>										
	<table border="1"> <tr> <td>기술사</td> <td>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td> </tr> <tr> <td>기능장</td> <td>전기</td> </tr> <tr> <td>기사</td> <td>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td> </tr> <tr> <td>산업기사</td> <td>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td> </tr> <tr> <td>기능사</td> <td>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td> </tr> </table>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시설(일반토목)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li> <li>-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li> <li>-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2년 이상인 사람</li> <li>- 토목관련 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한 사람</li> <li>- 토목관련 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직렬(직류) 및 직급	자격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아래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건축관련 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한 사람
  - 건축관련 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법령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

직렬(직류) 및 직급	자격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관련분야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소속 및 직급(위),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단, 자격증 소지 이후 또는 입상 이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한다.)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5 우대요건

구분	내용									
<우대요건>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시설(일반토목) 시설(건축)	<b>1. 직무관련 자격증</b>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을 제외하고, 직무관련 자격증(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소지에 따라 가점 - 기술사 10점, 기능장 8점, 기사 6점, 산업기사 4점, 기능사 2점 - 최대 20점까지 인정(자격증 제출 개수 제한 없음)									
	<b>2. 관련분야 근무경력</b>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연차별 차등 배점 - 근무개월 수 × 0.3점 - 최대 20점까지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소속 및 직급(위),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단, 자격증 소지 이후 또는 입상 이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한다.) - 응시 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은 제외함 ※ 직무관련분야 : 채용예정 직급의 담당 예정 업무									
<가산점>	<b>1.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b>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가산비율</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취업지원 대상자</td> <td>환산 점수 만점의 10% 또는 5%</td> <td>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td> </tr> <tr> <td>의사상자 등</td> <td>환산 점수 만점의 5% 또는 3%</td> <td>취업지원 또는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td> </tr> </tbody> </table>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 대상자	환산 점수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의사상자 등	환산 점수 만점의 5% 또는 3%	취업지원 또는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 대상자	환산 점수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의사상자 등	환산 점수 만점의 5% 또는 3%	취업지원 또는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사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는 환산 점수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li> <li>-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li> <li>-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은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li> </ul>										

## 4 시험 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차 서류전형	-	-	2021. 4. 9.(금)
제2차 면접시험	2021. 4. 9.(금)	2021. 4. 24.(토)	2021. 5. 12.(수)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에 공고하고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 면접시험의 시간,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입니다.  
(면접시험장소: 의정부지역에서 실시)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및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보훈상담 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우대요건서류 유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서류전형 시 적용되는 우대요건서류는 원서접수 마지막날까지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증명서류는 관계기관의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합격이 취소되거나 5년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또는 5%)을,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비율(5% 또는 3%)을 제출해야 하며,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를 잘못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심사 시에만 적용하며, 가산점은 점수로 환산되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적용됨

##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1. 3. 3.(수) 09:00 ~ 3. 5.(금) 18:00

나. 취소기간: 2021. 3. 3.(수) 09:00 ~ 3. 8.(월) 18:00

다.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관련서류는 (익일특급)동기우편으로 제출(방문접수 불가)]

○ 인터넷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http://edurecruit.goe.go.kr>)」 → 온라인 채용 → 지방공무원채용
- 응시수수료: 9급 5,000원이며, 결제방법(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에 따라 소정의 처리비용이 소요됨
-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파일: 면접시험 운영 시 본인확인을 위해 활용됨
- \* 인터넷접수 시 작성하는 응시원서는 면접시험 당일 본인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서류전형 심사 및 면접시험 운영 시에는 블라인드 임용시험 운영을 위해 시험위

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표는 ‘온라인 채용 서비스(<http://edurecruit.goe.go.kr>)’ 에서 2021. 3. 22.(월) 10:00부터 출력 가능
- \*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하고,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 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함
-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인터넷접수와 별개로 관련 제출서류는 동기우편으로 반드시 제출
- 동기우편 서류 제출 방법
  - 주소: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운영지원과
  -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익일특급 동기우편 발송)
  -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에게는 응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학력 등 개인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여부 체크하여 제출</li> <li>※ 1번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li> <li>※ 2~11번 관련서류: 등기우편(익일특급)으로 제출(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li> </ul>	필수
1. 응시원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접수</li> <li>※ 응시수수료 결제 후, 원서접수가 완료됨</li> </ul>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경력에 한하여 상세하게 기재</li> <li>○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증명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증빙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li> </ul>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4 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li> </ul>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4 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임용예정직렬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자유롭게 기술)</li> <li>○ <b>응시자격 관련</b> 자격증, 입상내역, 경력증명서 중 응시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li> <li>※ 사본 제출(단,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원본 제출)</li> </ul>	필수
5. 응시자격요건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본</li> </ul>	해당자
6. 우대요건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인정(원본)</li> <li>○ 근무기간과 담당업무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li> <li>○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li> <li>○ 상근직, 비상근직(시간제) 여부 명시</li> <li>※ 비상근직(시간제)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li> </ul>	해당자
7. 우대요건 경력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기재된 것)</li> </ul>	필수
8. 주민등록 초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명 필수</li> </ul>	필수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명 필수</li> </ul>	필수

구 분	내 용	비고
10.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명 필수</li> </ul>	필수
11.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li> <li>○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경력 일치여부 확인용으로 등제가 안된 경력은 불인정될수 있음(경력사항 등재 여부 꼭 확인)</li> <li>○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li> </ul>	해당자
12.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종류(가산비율) 및 보훈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본</li> </ul>	해당자

### [주의사항]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8 기타

- 가.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인사 관계법령을 준용합니다.
- 나. 1인당 1개 직렬(직류)에 1회만 지원가능(복수지원 금지)하며,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다. 재공고: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나 선발예정 인원과 같은 경우에는 원서접수 및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 재공고 시 종전 공고의 기 접수자는 재접수한 것으로 간주
-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바. 시험실시 결과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 본 시험시행계획은 우리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아.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차.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다른 임용기관으로의 진출은 4년간 제한됩니다.

본 시험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031-820-0574, 05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 인적사항

※ 응시번호	담당자기재	성명	(한글)
응시직렬 (직급)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시설(일반토목), 시설(건축) 중 선택기재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해당자 작성)

### □ 제출서류 목록

연번	서류명	필수여부	제출여부
1	응시원서[인터넷 접수]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2	이력서[별지 제1호 서식]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5	응시자격요건 증명서 - 자격증, 입상내역, 응시자격경력 중 응 시자 본인의 해당요건 증빙 ※ 사본 제출(단,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는 원본 제출)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6	우대요건 자격증(사본)	해당자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7	우대요건 경력증명서(원본)[별지 제4호 서식] ※ 응시자격요건 경력증명서와 중복되는 경우 추가 제출	해당자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8	주민등록초본(원본) ※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기재된 것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0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해당자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2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산서류(사본)	해당자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이 력 서

가.					
		( )			

.					
		( )			
		( )			
			--		
		~			
		~			

※ 응시자격으로 사용하는 자격증과 경력은 응시자 본인이 정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으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력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응시자격으로 사용하는 자격증과 경력이외의 사항을 우대요건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가 )					
가		( )	가		

2021 .					
: ( )					

## <이력서 작성 요령>

- ※ 양식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작성 (입력란 추가 가능)
- ※ 경력: 경력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분야 실무경력 사항만 기재
- ※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가. 공통사항 작성요령

- ▷ 응시번호: 경기도교육청에서 작성하고, 응시자는 공란으로 두고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응시분야: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시설(일반토목), 시설(건축) 중 응시자 본인이 응시하는 직렬(직류)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 ▷ 성 명: 응시자 본인의 성명을 작성합니다.

가.					
		( )	( )		

### 나. 응시자격 작성요령

- ▷ 응시자 본인이 응시자격요건과 우대요건으로 사용할 자격증과 경력을 정하여야 합니다.
- ▷ 자격증/입상: 본인이 응시자격요건으로 사용할 자격증 또는 각종 대회 입상내역을 작성합니다.
- ▷ 경력: 아래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응시자격(경력)란에 응시자 본인의 총 실무경력 중 자격증 취득(또는 대회입상) 이후 2년까지의 경력을 작성합니다.
  - 해당 직류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해당 직류관련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그 외의 자격요건으로 응시하는 자는 경력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자격증 취득 이전에 발생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1: OO )					
		( )			
OO		2020.01.01.	0000000		
		( )			
			--		
		~	--		

. ( 2: OO )					
		( )			
OO		2018.01.01.	0000000		
		( )			
			--		
OO	( )	2018 3 1 ~2020 2 29	2-0-0		000000

※ 예) 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하고, A기관에서 3년 6개월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에 기능사자격증과 A기관 2년의 실무경력을 작성하고, 우대요건 경력란에 나머지 1년 6개월의 실무경력을 작성합니다.

**다. 우대요건 작성요령**

- ▷ 자격증: 응시자격으로 사용한 자격증 이외에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직무관련 자격증을 작성합니다.
  - 제출한 자격증이 응시직류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제출하더라도 우대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예) 공업(일반기계)직류에 응시하는 사람이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자격증을 제출한 경우 미인정
- ▷ 경력: 응시자격으로 사용한 경력이외에 직무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작성합니다.
  - 서류접수 환산 시 적용되는 우대경력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로 작성합니다.
  - 응시자격으로 2년의 경력을 작성한 응시자는 그 기간만큼 제외하고 나머지 경력을 작성합니다.
- ※ 예) 응시자격에 2020.03.31.까지(2년) 경력을 작성한 경우, 2020.04.01.부터 우대경력을 작성

( 1: ○○ )				
	( )			
□□	2020.01.01.	0000000	0000000	
□□	2020.02.01.	0000000	0000000	
△△	2020.03.01.	0000000	0000000	
		--		
★★ ( )	2020 1 1 ~ 2020 10 1	0-10-0		0000
◇◇ ( )	2020 11 1 ~	0-4-5		00000

( 2: ○○ ) 2020.3.31. 2				
	( )			
□□	2020.01.01.	0000000	0000000	
△△	2020.02.01.	0000000	0000000	
△△	2020.03.01.	0000000	0000000	
		--		
○○ ( )	2020 4 1 ~	0-11-5		0000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작성 시 참고사항>**

( 1 ) ○○ , 1 가  
- 2 , 1  
- 33

구 분	배점 및 평정					
실무경력(20점) (응시 자격요건 제외)	( 33 )개월 × 0.3점					
	9.9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현황 (20점) (응시 자격요건 제외)	소계	기술사 (10.0점)	기능장 (8.0점)	기사 (6.0점)	산업기사 (4.0점)	기능사 (2.0점)
	10			1		2
			6		4	

( 2 ) ○○ , 2020.3.31. 2 가 ,  
- 1 , 2 , 1  
- 84

구 분	배점 및 평정					
실무경력(20점) (응시 자격요건 제외)	( 84 )개월 × 0.3점					
	20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현황 (20점) (응시 자격요건 제외)	소계	기술사 (10.0점)	기능장 (8.0점)	기사 (6.0점)	산업기사 (4.0점)	기능사 (2.0점)
	20		1	2	1	
		8	12	4		

※ 84개월×0.3점=25.2점이나, 최대 20점까지 인정하여 20점 배점  
 ※ 기술사 8점, 기사 12점, 산업기사 4점 총 24점이나, 최대 20점까지 인정하여 20점 배점

【별지 제2호 서식】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서 명 (자필)
공업(일반기계) 9급, 공업(일반전기) 9급, 시설(일반토목) 9급, 시설(건축) 9급 중 선택 기재			

## 자 기 소 개 서 (1/2)

**[작성 용지 및 기준]**

- 작성용지 : A4 단면인쇄
- 분량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체 : 휴먼명조로 하되 다른 글자체를 일부 혼용 가능
- 글씨크기 13~15(일부필요부분 크기조정 가능), 줄간격 150~170mm, 용지 여백은 위쪽 20mm, 아래쪽 15mm, 머리말, 꼬리말은 각 10mm 작성(기타 문단 위 간격 등은 지정하지 않음)

**[작성 내용]**

- 자유롭게 기술

**[유의사항]**

- 내용 중 성명,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불필요한 내용은 임의 삭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공란으로 두고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서 명 (자필)
공업(일반기계) 9급, 공업(일반전기) 9급, 시설(일반토목) 9급, 시설(건축) 9급 중 선택 기재			

## 자 기 소 개 서 (2/2)

【별지 제3호 서식】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서 명 (자필)
공업(일반기계) 9급, 공업(일반전기) 9급, 시설(일반토목) 9급, 시설(건축) 9급 중 선택 기재			

## 직 무 수 행 계 획 서 (1/2)

**[작성 용지 및 기준]**

- 작성용지 : A4 단면인쇄
- 분량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체 : 휴먼명조로 하되 다른 글자체를 일부 혼용 가능
- 글씨크기 13~15(일부필요부분 크기조정 가능), 줄간격 150~170mm, 용지 여백은 위쪽 20mm, 아래쪽 15mm, 머리말, 꼬리말은 각 10mm 작성(기타 문단 위 간격 등은 지정하지 않음)

**[작성 내용]**

- 채용예정 업무에 대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유의사항]**

- 내용 중 성명,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불필요한 내용은 임의 삭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공란으로 두고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서 명 (자필)
공업(일반기계) 9급, 공업(일반전기) 9급, 시설(일반토목) 9급, 시설(건축) 9급 중 선택 기재			

## 직 무 수 행 계 획 서 (2/2)



【별지 제6호 서식】

<b>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b>	<b>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b>	<b>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b>
<p>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입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입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p>	<p>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이용 목적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신원조회 확인 ⇒ 경찰서: 성범죄경력 여부 확인 ⇒ 행정안전부: 비위면직자 확인 ⇒ 각종 자격증 발급기관: 가산점 확인 ⇒ 인사혁신처 :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이력조회 목적 ⇒ 근무기관: 근무 경력 확인 ⇒ 질병관리청: 격리대상자 여부 ⇒ 법무부: 출입국사실 조회 나.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2021. 3. . 성명 : (서명)</p>	<p>2021. 3. . 성명 : (서명)</p>	<p>2021. 3. . 성명 : (서명)</p>